

### ▣ 지정 피난소 · □ 지정 긴급 피난 장소 일람

▣ 명칭	소재지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인 현상의 종류	
		토사 재해	
① 걸쳐센터유메노모리	명천3301	○	
② 명천 초 중학교	명천2281	○	
③ 명천 데이 서비스 센터	명천1575	×	
④ 명천 생활개선 센터	명천980	×	
⑤ 명천 키소지하라 체육관	명천1044-16	○	
⑥ 명천 요리아이도 체육관	명천980	×	

○ : 피난 가능 × : 피난 불가 - : 상황에 따라 개설  
※마츠모토시의 「지정 피난소」는 「지정 긴급 피난 장소」도 겸하고 있습니다.

▣ 명칭	소재지	대상으로 하는 비정상인 현상의 종류
⑦ 명천 종합 그랜드	명천1044-342	○

### 범례

#### 토사 재해 경계구역

급경사지의 붕괴	토석류	산사태
경계구역	경계구역	경계구역
특별 경계구역	특별 경계구역	특별 경계구역
▣ 지정 피난소		
▣ 지정 긴급 피난 장소		
■ 고속도로	■ 국도	■ 지방도로
■ 철도(JR)	+++ 철도(사철)	하천·수역
— 활단층(위치 확실)	— 활단층(위치 불확실)	···· 활단층(잠복 부분)
···· 활단층(잠복 부분)	···· 활단층(잠복 부분)	--- 추정활단층 ← 토우쿄크 변형

### 토사 재해란

토사 재해란, 급경사지의 붕괴·토석류·산사태, 구배의 갑작스러운 산이나, 벼랑, 계류가 있는 지역에 발생합니다.

#### 급경사지의 붕괴

비나 지진 등의 영향으로 지반이 느슨해져, 돌연 경사면이 붕괴되는 현상.



#### 토석류

산이나 강을 구성하는 토사가 큰 비 등에 의해 발생하는 대량의 물과 함께 격렬하게 밀려나는 현상



#### 산사태

지하수 등의 영향에 의해, 경사면을 구성하는 흙덩이가 경사면 아래쪽으로 크고 미끄럼 내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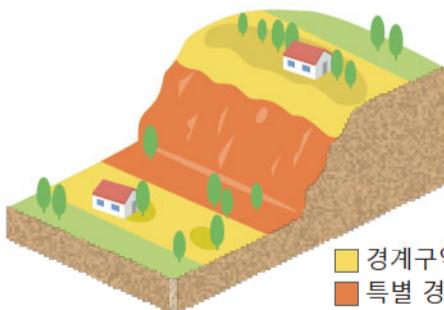
### 토사 재해 경계 구역이란

나가노현이 토사재해방지법에 근거해, 토사 재해에의 주의가 필요한 구역으로서 토사 재해 경계구역을 지정해 있습니다.

토사 재해 경계구역은, 경사지의 형태에 주목해 일률적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이 직접 토사 재해의 위험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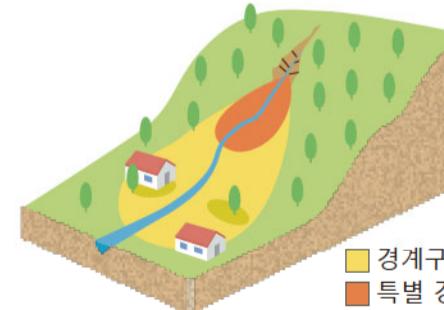
#### 급경사지의 붕괴

경계구역  
특별 경계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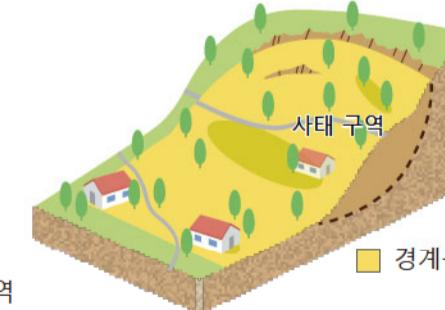
#### 토석류

경계구역  
특별 경계구역



#### 산사태

사태 구역  
경계구역



### 토사 재해의 징조 현상

토사 재해의 발생전에는, 징조 현상이 보이는 일이 있습니다.

벼랑의 근처나 벼랑의 계류 부근에 살고 있는분은, 징조 현상 등에 의해 위험을 느끼면 즉시 피난해 주세요.

그 때는 근린에의 소식을 부탁합니다.

안전을 확보한 뒤, 마츠모토시에 연락해 재해 정보를 제공해 주세요.

#### 급경사지의 붕괴

- 자갈이 떨어지고 있다
- 절벽에서 솟아나는 물
- 벼랑에 균열이 발생한다



#### 토석류

- 산에서 들리는 소음
- 물이 턱한, 유수에 나무가 섞인다
- 비가 계속되는데, 강의 물이 줄어 듈다



#### 산사태

- 지면에 균열을 할 수 있다
- 지면이 함몰·웅기 한다
- 높이나 우물의 물이 턱해진다
- 경사면에서 물이 분출한다



#### 토사 재해 경계구역

토사 재해의 우려가 있는 구역  
(옐로우 존)

#### 토사 재해 특별 경계구역

토사 재해 경계구역 가운데, 건축물에 손상·파괴가 생겨 주민에게 현저한 위험이 생길 우려가 있는 구역 (레드 존)

#### 택지 건물 거래에 있어서의 조치

경계구역에서는, 택지 건물 거래 업자는, 해당 택지 또는 건물의 매매등에 해당해, 경계구역내인 취지에 대해 중요 사항 설명을 실시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 ● 경계 피난 체제의 정비

재해 정보의 전달이나 피난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경계 피난 체제의 정비를 도모할 수 있는 [마츠모토시]

#### ● 건축물의 구조 규제

건축물의 구조가 안전한지 어떤지 건축 확인이 되는 [마츠모토시]

#### ● 특정의 개발 행위에 대한 허가제

주택 택지 분양이나 배려자 이용 시설의 건축을 위한 개발 행위는, 기준에 따른 것에 한계 허가되는 [나가노현]

#### ● 건축물의 이동 권고

현저한 손상·파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해, 이전등의 권고를 도모할 수 있는 [나가노현]